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1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0,070,700원, 지방교육세 4,083,530원, 농어촌특별세 36,836,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가. 원고는 1968. 12. 31. [redacted]시 [redacted]동 781-1 대 224,498㎡(당초 223,283㎡였으나 토지 합병으로 인하여 1,215㎡ 증가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1971. 11. 27. 공장등록을 하고 1973. 2. 1.경부터 자동차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해왔다.

나. 원고는 2009. 2. 20.부터 2011. 2. 16.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3개동(연면적 13,480.07㎡)을 신축하고, 2011. 2. 16. 및 2012. 4. 16. 1동(연면적 331.19㎡) 및 3동(연면적 987.29㎡)을 증축하였으며(이하 위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2009. 10. 13.부터 2012. 12. 13.까지 차량운반구 23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각각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 및 차량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3. 5. 8.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공제한 취득세 450,070,700원, 농어촌특별세 36,836,970원, 지방교육세 4,083,530원 합계 490,991,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와 차량 또는 기계장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 및 증설로 인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원고는 30년 이상 경과된 기존 공장 옆에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것이고, 노후된 기존 차량의 교체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건축물 및 차량은 위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승용차를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바목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이 신설 또는 증설한 '당해 부동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목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고,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당초 공장용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이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5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 중과세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므로 위 각 조항의 적용대상은 신설 또는 증설한 '당해 부동산'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과세물건은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취득한지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은 그 토지와 별도로 중과세 대상 과세물건이 되는 점, ③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발생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데, 기존의 공장부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더라도 부대업무에 사용되던 토지나 건축물을 제조시설로 변경하는 등 그 시설규모를 늘리는 경우에는 인구집중 및 공해발생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바목 소정의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바목에 따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취득한 지 5년 이상이 경과한 '당해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공장의 증설이란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2. 20.부터 2011. 2. 16.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이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함으로써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14,798.55㎡ 확장시킨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중과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노후 등으로 대체취득한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2호 사목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라고 하더라도 노후 등의 사유로 기존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이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공장이 증설된 후 5년 이내에 취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차량이 기존 차량의 매각 또는 폐기일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된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을 일반 취득세율의 3배로 중과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대도시(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의 대도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개념이고,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의 대도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념으로서 제112조 제3항의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의미이므로 제138조 제1항 단서의 대도시를 '대도시'로,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의 대도시를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일반 등록세율의 3배로 중과하되 첨단업종 등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으나, 2010. 12. 27.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대응하는 규정이, 제13조 제2항에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대응하는 규정이 모두 취득세율 중과 사유로 규정되게 되었다.

원고는 개정 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 모두 취득세 중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첨단업종 등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그 적용 조항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를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과 제138조 제1항에 대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하는 규정인데, 기존에 첨단업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만을 제외하는 사유였던 점, ②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고, 제13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데, 사업용 과세물건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과 건설기계 등이 포함되므로 위 각 조항은 그 적용대상이 다른 점, ③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은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 각 조항이 적용대상을 달리 하는 조항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④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위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모두 3배 중과되었는데, 개정 이후에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표준세율의 3배가 부과되므로(위 표준세율은 취득사유에 따라 기존의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합산한 비율로 정해진 것임), 결국 개정 전후의 세율이 동일한 점, ⑤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과세물건에 따라 별개로 또는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가 제13조 제1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조항은 기존의 등록세 부분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세율[= 이 사건 건축물 6.8%{= 2.8%(원시취득 표준세율) + 4%(중과기준세율 2% × 200/100), 이 사건 차량 8%{= 4%(영업용차량 표준세율) + 4%(중과기준세율 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200/100)]에서 피고가 이미 신고한 취득세(이 사건 건축물 2.8%, 이 사건 차량 4%)를 공제한 세율(각 4%)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은 이 사건 건축물 4.4%{= 8.4%(원시취득 표준세율 2.8% × 300/100) - 4%(중과기준세율 2% × 200/100)}, 이 사건 차량 8%(영업용차량 표준세율 4% × 300/100) - 4%(중과기준세율 2% × 200/100)}임],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단서의 중과세 배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아가 이 사건 건축물이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된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정경희

판사 강미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6

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장의 증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redacted]시 등		